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와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해석의 합리화 방안 검토

김 현 경\*

## I. 서론

2020.2.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및 ‘가명처리’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가명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곧바로 알아볼 수 없으므로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그 처리가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중 하나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을 두고 있다(제3조제7항).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이하 본 고에서는 ” 공익목적등 “이라 한다)<sup>1)</sup>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8조의2 제1항). 이러한 조항이 실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 목적의 특정 - 식별(가능)정보의 가명처리 - 가명정보의 생성 및 처리 “라는 과정이 하나의 일체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식별(가능)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가명처리’와 가명처리를 통하여 생성된 가명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가명정보 처리’를 각각 별개의 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처리정지권”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은 식별(가능)정보의 가명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공익목적등의 가명처리에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을 인정하였다. 즉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개인(식별)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의사에 따라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제28조의2의 입법취지를 희석화시키고 본 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본고는 “김현경,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와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해석의 합리화 방안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9236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법 제1권 제68호(2024.06)”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1) 약어는 법문내용과 무관하게 필자가 임의로 정한 것임

다.

## II. “처리정지권”의 의미

### 1. 처리정지권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항 본문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 4가지 거절사유를 인정한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73조 제3호).

### 2. 처리정지권의 의미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보주체의 권리는 인격권이며,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 역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혹은 합리적 사유 없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한은 법익균형의 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정당화되는 헌법적 근거는 “영업의 자유”일 수도 있고, “동의”나 “계약”에 의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한 계약 법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따라서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혹은 침해하도록 해석되거나 입법되어서는 안 된다.

2)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은, 로마법의 근간이 되는 핵심 법 원칙이었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처리정지권은 “권리의 행사요건이 없고,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거절사유 또한 넓지 않아서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처리정지권을 가지는 셈” 이라며, “더구나 사인 간의 권리행사를 거부했다고 바로 형사처벌하는, 수사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이런 법제는 그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갖추었는지도 심히 의문” 이라고 한다.<sup>3)</sup> 하물며, 처리정지의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고(제37조제4항), 파기하지 않으면 3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75조제2항제12호). 즉 처리정지권과 파기를 연동시키면서 처리정지권은 일시적 혹은 영구적 “정지” 를 넘어 삭제권의 행사도 포함하는 권리로 확장되어 있다.

즉 정리하면, 처리정지권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합의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정보주체의 강력한 권리다. 특히 처리정지권은 정보주체의 인격권인데,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리정지권의 불이행 자체를 인격권 침해로 보아 형사처벌 하므로 매우 이례적이다. 무엇보다도 정지에 그치지 않고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므로 엄격히 “처리정지권” 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금지권” 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판결의 내용 검토

#### 1. 사건 개요

##### 가. 사실관계

원고는 통신사와 이동전화 이용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1)피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피고 또는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상이 된 원고의 개인정보 일체에 대한 열람신청 2)향후 원고의 개인정보를 피고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sup>3)</sup> 이인호(2023), 한국 개인정보보호권의 절대화 현상에 대한 비판\* - 개인정보처리정지권에 대한 해석론을 포함하여 -, 공법연구 제52집 제1호 2023년 10월, 235-236.

## 나. 판결 내용

제1심판결에서<sup>4)</sup>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법원은 “식별가능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가명처리’와 가명처리를 통하여 생성된 가명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가명정보 처리’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정지 요구권”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은 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생성된 ‘가명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처리’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권”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중략)..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에서 처리정지 요구권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가명정보’에 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 2. 주요 쟁점

본 판결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처리를 허용한 제28조의2와 관련하여 ‘식별가능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가명처리’와 가명처리를 통하여 생성된 가명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가명정보 처리’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처리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가명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데이터 처리 관행에 현격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제28조의2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①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설정 등 사전 준비 → ② 처리 대상의 선정 및 위험성 검토 → ③ 가명처리 수행 → ④ 가명처리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수행 → ⑤ 가명정보의 생성 및 처리 단계이다.

판례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식별(가능)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가명처리(②, ③, ④ 단계)와 가명처리를 통하여 생성된 가명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가명정보 처리(⑤단계)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처리에 해당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②, ③, ④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⑤ 단계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구분되는 별개의 처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자는 불가피한 일체의 관계이므로 ⑤단계에 처리정지권의 행사가 면제된다면 당연히 “②, ③, ④ 단계”에도 면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처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처리정지]

리정지권이 배제되는 것은 ⑤단계이며 식별(가능)정보의 가명처리(②, ③, ④ 단계)에서는 처리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판례는 제28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공익적목적등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도록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와 관련된 쟁점은 첫째, 제28조의2에서 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가 처리(⑤단계)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개인식별정보를 가명처리(②, ③, ④ 단계) 해야 하는데 이로서 구분되는 별개의 처리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가와 둘째, “가명처리”와 “처리정지권”의 처리가 동일한 의미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 처리정지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Ⅳ)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 Ⅳ. 합리적 해석 및 입법과제

##### 1. 제28조의2에 있어서 “가명처리”와 “가명정보 처리”의 관계

제28조의2는 공익목적등 일정한 목적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처리를 허용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명정보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가명처리가 필수다. 가명처리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의해 좌우된다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 개정법상 가명정보의 활용 근거는 명시되어 있는 반면 가명처리의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1. 6. 공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아래와 같은 관련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5면 >

<p><b>4.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안 제28조의2, 제28조의7, 제60조)</b></p> <p><b>가. 제·개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법 제28조의2제1항의 ‘가명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포함한다는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li> <li>※ 현재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12.)」에 명시되어 있음</li> <li>○ 가명정보의 ‘과거의무’ 및 반출심사위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상 미비점 보완 필요</li> </ul> <p><b>나. 제·개정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이 가명정보의 처리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화</li> </ul>
---

가명처리 자체가 가명정보를 위해 필수불가한 조건이므로 이를 일체 된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처리정지권은 가명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가명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으로써 가명처리에서 배제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 2. 허용된 행위로써 ‘가명처리’의 해석

### 가. 공익목적등을 위하여 허용된 행위

제28조의2는 가명정보를 공익목적등이라는 제한적 목적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공익목적등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더 우월하다는 혹은 공익목적의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을 정당화하는 균형추인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법적 결단이다.

사인 간 거래에 있어서 대부분 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화는 ‘정보주체의 동의’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공익목적등에 한정해서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통상의 이용을 위한 처리가 아니라 보호 조치로써 “가명화”를 전제로 한다. 헌법재판소도 본 조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심판대상조상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를 허용함으로써 다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지식 축적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다. 반면, 정보주체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가 자신의 동의없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제한된 목적으로 처리될수 있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의 정보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sup>5)</sup>며 28조의2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 나. 일반적 ‘활용’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조치

“가명처리”는 일반적 개인정보의 활용을 전제로 규정한 처리와 동일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가명화(pseudonymisation)는 데이터 보안, 목적 제한 원칙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의무 조치로 간주 된다.<sup>6)</sup> 비교법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sup>5)</sup> 현재 2020헌마147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sup>6)</sup> Esayas, Samson, The Role of Anonymisation and Pseudonymisation Under the EU Data Privacy Rules: Beyond the ‘All or Nothing’ Approach (Oct 15, 2015). Europe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 6, No 2, 2015, Available at

포방하고 있다고 인정되며,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의 모범이 된 GDPR의 경우에도 공익, 과학적·역사적 연구, 통계 목적을 위해 ‘가명정보의 처리’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허용하고 있다.<sup>7)</sup> 특히 EU의 「Handbook에 의하면 “GDPR에 ‘가명정보’ (pseudonymised data)라는 개념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sup>8)</sup> 대신에 “‘가명화’ (pseudonymisation)라는 용어를 통해, 가명화가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프라이버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조치”임을 GDPR의 여러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sup>9)</sup> 일례로 EU는 “가명처리는 익명처리의 한 방법이 아니라, 단지 정보주체의 원래 신원과 데이터셋(dataset)의 연결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며 따라서 유용한 보안 조치 중의 하나이다”라고도 한다.<sup>10)</sup> 또한 데이터 처리의 설계 및 보안(design and security of its data processing)(GDPR 제25조 제1항)을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명처리는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의 최초수집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GDPR 제6조 제4항)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sup>11)</sup> 즉 일반적 활용을 전제로 한 “처리”와 “가명처리”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가명처리”는 허용된 처리로 일반적 개인정보 처리의 “특별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권의 합리적 해석과 적용방안

#### 가. 권리의 지나친 포괄적 확장성에 대한 경계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sup>12)</sup>에 의하면 “처리정지 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 활동에 대한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동의 철회권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다. 동의 철회권은 정보주체 자신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처리정지 요구권은 정보주체 자신이

SSRN: <https://ssrn.com/abstract=2746831>

7) GDPR Art. 89 Safeguards and derogations relating to processing for archiving purposes in the public interest, scientific or historical research purposes or statistical purposes

2. Where personal data are processed for scientific or historical research purposes or statistical purposes, Union or Member State law may provide for derogations from the rights referred to in Articles 15, 16, 18 and 21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safeguar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so far as such rights are likely to render impossible or seriously impair the achievement of the specific purposes, and such derogations are necessary for the fulfilment of those purposes.

8) “there is no concept of ‘pseudonymised data’ under EU law.”(EU, 「Handbook」, p. 83).

9) 강달천. (202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한계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문제점. 중앙법학, 22(3), 35-36.

10)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P.3

11)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외, 「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2018 edition)」 p. 95

12)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행) 381-382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처리정지 요구의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든지 요구가 가능하다” 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7조제5항).

민간영역에서 법령상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의 경우다.<sup>13)</sup> 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이유를 소명할 필요 없이)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에 의하면 민간영역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용목적과 범위 등을 특정해 사전에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즉 정보주체의 단순 변심에 의해 개인정보 처리가 정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얼마든지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인정보의 적법요건에 따라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급작스런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계약의 해지·파기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계약 해지 의사만으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처리정지권의 행사는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적법처리 요건을 모두 사문화시키며 정보주체에게 절대적 권리에 준하는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당한 개인정보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간의 합리적 균형은 불가능하게 된다. 과거 민간영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할 수 있는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전 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열람·정정·삭제요구 이외에 “동의철회권”만을 인정하였던 것도(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1항 참조, 2018년 구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권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되지 않았음) 이러한 법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나. 해외 입법례와 균형성 필요

비교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표방하고 있다고 인정되며,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의 모범이 된 EU GDPR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이라는 포괄적 절대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 제한권(right to restriction of processin

<sup>13)</sup> 개인정보처리의 적법요건(제15조 제1항).

g)<sup>14</sup>과 반대권(right to object)<sup>15</sup>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 제한권(right to restriction of processing)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이 확인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처리를 제한시킬 수 있는 권리다. 컨트롤러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처리제한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①정보주체가 정보의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②처리가 불법적이지만, 정보주체가 삭제를 반대하고 처리제한을 요구한 경우, ③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법적 청구권 행사나 방어를 위해 해당 정보를 요구한 경우, ④정보주체가 처리를 반대하였으나 컨트롤러의 정당한 사유(공익목적, 법적 의무 준수 등)가 있어 이익형량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다. 단,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불가능하거나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제3자에게 정보 처리제한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의 동의, EU회원국의 공익상 목적 등의 사유로 처리 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처리정지권은 행사요건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도(단순 변심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 비해, GDPR의 처리제한권은 특정한 사유(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처리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 정보주체가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법적 권리 행사를 요구한 경우, 처리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이익형량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로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처리정지권 행사는 바로 파기등의 조치로 이어지나, GDPR의 처리제한은 제한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사용이 한시적으로 정지되는데 불과하다. 당연히 공익목적 가명처리에 대하여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개인정보 반대권(right to object)은 다음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1)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해, “자신의 특정 상황과 관련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①공공기관 혹은 공익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Art. 6 GDPR.1(e)) 또는 ②개인정보처리자(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는 적법처리 요건(Art. 6 GDPR.1(f))의 경우다. 다음으로 2) 개인정보가 직접마케팅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정보주체는 반대할 권리가 있다. 특히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는 더이상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3) 개인정보가 제89조(1)에 따라 과학적,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정보주체는 자신의 특정 상황과 관련된 사유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 단, 공익을 이유로 수행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이러한 반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

<sup>14</sup>) GDPR Art. 18 (Right to restriction of processing)

<sup>15</sup>) GDPR Art. 21 (Right to object)

혹자는 3)의 반대권을 근거로 공익목적등의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권은 정보주체의 단순한 변심이나 아무 이유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특정 상황과 관련된 사유(on grounds relating to his or her particular situation)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반대권의 해설에 대하여 영국 ICO의 해설에 의하면 이러한 반대권은 특별한 상황에 따라 그 적용방식이 다르다.<sup>16)</sup>

우선 직접마케팅에 반대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는 절대적 권리다. 직접마케팅에 반대권을 행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면제사유나 근거는 없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경우에도 자동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공무수탁사인으로써 수행하는 것 포함)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반대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정보주체의 특정한 상황에 근거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반대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이익·권리·자유보다 우선하는 강력한 합법적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적 청구의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 반대권을 거부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금전적 손실 등 상당한 피해나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 반대권을 행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의 정당한 사유가 이러한 개인적 사유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하물며 과학적/역사적 연구 또는 통계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반대권)은 더 제한적이다.<sup>17)</sup> 개인정보를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혹은 통계 목적으로 GDPR의 적절한 세이프가드조치(가명화 등)로 처리하는 경우 반대할 권리는 다음 두 가지 경우 1)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2)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경우에는 이러한 반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반대권은 명백히 그 근거가 없거나<sup>18)</sup> 과도한 경우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GDPR의 규정과 달리 우리의 처리정지권은 “특별한 사유없이” 정보주체의 단순 변심으로도 처리정지가 가능하다. 위반 시 형사처벌도 부과된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 행사로 인해 가명정보로 만들 수 있는 “가명화”가 불가능하다면, 가명정보의 처리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배제한 입법취지를 잠식시키게 된다. 즉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

16)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uk-gdpr-guidance-and-resources/individual-rights/individual-rights/right-to-object/#ib1> (2024.4.7. 확인)

17)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uk-gdpr-guidance-and-resources/individual-rights/individual-rights/right-to-object/#ib1> (2024.4.7. 확인)

18) 정보주체가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요청의 의도가 악의적이며 업무방해 이외의 실제 목적 없이 조직을 괴롭히는데 사용되는 경우 등이다.

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명처리”가 필수인데, “가명처리” 여부를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을 통해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한다면 일정한 공익목적등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 다. 처리정지권 고유목적에 합치되는 해석과 적용 필요

지금의 처리정지권은 거의 처리 ‘금지’ 청구권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리를 정지하는 것은 처리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리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처리정지권을 처리금지권으로 해석, 운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처리정지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주체의 무분별한 단순 변심에 의한 처리정지까지 보호하는 것이 정당한 정보주체의 권리인지 의문이다. 더불어 처리정지 후 즉각 파기로 연계하는 것은 처리정지권의 범위를 파기삭제권화 하는 것으로 처리정지권의 부적절한 확장이다. GDPR을 비롯한 어떠한 입법례도 처리정지를 파기와 연동시키고 있지 않다.

실사 식별(가능)정보의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처리를 구분하여 처리정지권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제28조의2는 제37조제2항 제1호의 예외사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명처리정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같은 법 제28조의2 제1항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또는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일 뿐 ‘가명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제37조제2항 제1호의 예외사유,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명정보를 처리’한다는 의미에는 당연히 “가명처리”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법문 형식으로만 해석한 것이다. 이는 실사 “삶은 고기만 먹도록 강제하면서, 삶는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결<sup>19)</sup> 및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sup>20)</sup> 등을 참조

19)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 법제처 법령해석(2017. 12. 4. 17-0506)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 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요건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면, 다른 법률 규정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sup>21)</sup> 따라서 제28조의 2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처리 권한이 우선되고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 라.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권리배제의 의미

가명정보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제28조의2)에 대하여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제20조), 개인정보 이용 제공 내역의 통지(제20조의2),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제27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제34조제1항), 개인정보의 열람(제35조),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제36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등(제37조)의 적용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권리를 배제한 것에 대하여 판례는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의 결정권을 상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실시하면서, “그렇다면 처리정지 요구권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가명정보’에 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정보주체가 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봉쇄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가명정보의 취지를 오해한 해석이다. 가명정보는 통상의 개인정보와는 달리 식별(가능)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것<sup>22)</sup>이다. 가명정보의 처리에서 배제되는 “통지/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는 모두 정보주체가 재식별되어야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셰이프가드로써 식별(가능)정보를 비식별정보 처리한 것이 가명정보인데 이러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재식별해야 하므로 오히려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역행하게 되어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해 해당 권리를 배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 배제를 “정보주체의 개인

21)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제1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타 다수의 입법례와 달리 반드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같은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규정도 동호의 예외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sup>22)</sup>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정보자기결정권을 원천적으로 봉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당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sup>23)</sup>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 대한 각종 통지의무를 이행하거나,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어느 것이 해당 정보주체에 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명정보는 그 개념상 일단 가명처리되고 나면 그 자체만으로는 각 가명정보에 대응되는 정보주체를 알 수 없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다목, 제1호의2, 신용정보법 조15호, 제16호 참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거나 열람 요구 등에 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일 가명처리한 이후에도 동지나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필요시 추가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될 때에 이러한 추가 정보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명정보가 재식별이 용이한 상태로 처리된다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통상의 개인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고 한다.

---

<sup>23)</sup> 현재 2020헌마1477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등 위헌확인, 2021헌마748(병합)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등 위헌확인

## 참고문헌

### I. 단행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20. 12.)

### II. 논문

강달천. (202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한계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문제점. 중앙법학, 22(3)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2014. 10.

김민호,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6권제4호, 2014

김현경,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동의’ 제도의 딜레마, 성균관법학 제32권제3호, 2020.9.

\_\_\_\_\_,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본질과 보호법익의 재검토, 성균관법학 제26권 제4호, 2014.12.

\_\_\_\_\_, 정보주체의 권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검토-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 인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26권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문재완,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9권제2호, 2013.

박경신,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율 및 해외 입법례”, 법학논집 제38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p.1-25, 2018.

이인호, 한국 개인정보보호권의 절대화 현상에 대한 비판\* — 개인정보처리정지권에 대한 해석론을 포함하여 —, 공법연구 제52집 제1호 2023년 10월

전승재, (2023).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처리거부권·가명처리거부권의 인정가부 - 서울중앙지법 2022. 11. 17. 2021가합509722 판결에 관하여. 은행법연구, 16(1), 193-232.

Esayas, Samson, The Role of Anonymisation and Pseudonymisation Under the EU Data Privacy Rules: Beyond the ‘All or Nothing’ Approach (Oct 15, 2015). Europe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 6, No 2, 2015,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746831>

### III. 기타자료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 「Opinion 05/2014 on Anonymisation Techniques」, 2014.4.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Article 3 and Article 4.

EC, ‘On the Free Flow of Data and Emerging Issues of the European Data Economy, Accompanying COM(2017) 9 Final’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SWD(2017) 2 final, esp. 23.

EC, ‘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 (Communication) COM(2017) 9 final.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외, 『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2018 edition)』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data protection』(Version 2.2, 2017.09.04.)

\_\_\_\_\_, 『Guide to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1.0.248, 2018.8.